

## 유럽의 석유사정과 석유정책

이 자료는 日本의 유럽 석유사정조사단의 조사보고서를 옮긴 것이다.〈편집자 註〉

### 1. EC통합과 에너지·석유정책

(1) EC의 域內 시장통합은 '85년의 이사회에서 결정되어 '87년에 회원국의 비준을 완료, 의정서가 발효되었다.

(2) 통합의 목적은 EC시장을 단일의 강대한 시장으로 통합하여 세계경제에 있어 EC의 지위를 부활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규제완화와 조화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3) 에너지에 관해서는 '88년의 "The Internal Energy Market"에 EC위원회의 기본자세가 나타나 있다. 그 가운데는 각국의 에너지정책을 통일하고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EC의 경제력 강화에 공헌하도록 低コスト의 에너지공급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으로 되어 있다.

(4) 이를 위한 과제로서는 현재 세계 환경규제의 통일, 수입허가제 폐지, 하부조직의 정비, 석탄에 대한 국가보조의 재평가 등이 검토되고 있다.

(5) 석유는 다른 에너지에 비해 어느정도 규제완화와 합리화가 진척되어 있지만

- ① 세계의 평준화(소비세와 부가세)
- ② 환경기준과 석유제품 규격의 통일
- ③ 수입규제 폐지
- ④ 경제·판매에 관한 독점 및 가격규제의 배제
- ⑤ 가격·수송 등에 관한 정부간섭의 배제 등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6) 이러한 과제의 해결을 위해, 각국 정부와 EC위원회간에 적극적인 작업이 계속되고 있으나 스케줄이 지연되는 기미가 있어 '92년도 말의 목표달성을 약간 곤란하다는 견해가 강하다. 그러나 '90년대 중에는 시장의 통일이 상당부분 달성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2. 석유시장의 통합

#### (1) 英國

① 비축의무 등의 예외를 빼고는 거의 완전히 자유화되어 있다.

② 합리화추진결과 경제능력이 '79년 아래 30% 감소, 1,800만B/D로 된 외에 주유소도 '70년대초의 3만3천개소로부터 2만개소로 감소했다.

③ 경제·판매부문의 수익성은 西獨, 프랑스, 이탈리아 등 보다 전통적으로 좋다. 그 이유는

- 과점이 진척되어 있다.
- 제품수입이 적고
- 국민의 가격의식이 약간 낮은 것 등이다.

최근 MMC(독점합병위원회)가 업계의 경쟁상황을 조사하고 있어 2월에는 결과가 발표될 전망이다.

#### (2) 프랑스

① 가격규제는 폐지되었으나 원유수입·경제허가제(A-10제도), 제품수입, 판매허가제(A, 5제도), 자국제선박 사용의무 등의 규제가 남아있다.

② 정제능력은, '79년 아래 반감하여 약 180만B/D로 되었으나 주유소 부문은 아직 합리화과정에 있다(최근 4년간 36,000개소에서 29,000개소로 감소).

③ 슈퍼마켓은 저가판매로 휘발유 비중을 40% 상당까지 증가시키고 있다. 그 결과 가격이 낮아져 석유기업의 수익성은 악화되고 있다. 최근 수년간 업계전체로서 이익을 올린 것은 '86년 뿐이었다.

### (3) 西獨

① EC 가운데는 英國과 더불어 규제가 완화된 나라의 하나이다. EC통합에 즈음하여 장해가 되는 것은 국내 수송시 국내업자 사용의무로 보고 있다.

② 국내 석유시장은 완전히 자유화되어 있어 유럽내에

서 가장 경쟁이 심하다(독립계의 비중 20%정도). 따라서 석유기업의 수익성은 좋지 않다('80년대에 혹자는 '86년과 '89년 뿐).

③ 이 때문에 석유회사는 대폭적인 합리화를 수행하여 '80년대 들어서 정제능력은 반감했고, 주유소수는 '68년의 47,000개소에서 18,000개소로 감소했다.

### (4) 이탈리아

① EC제국 중에서는 규제완화의 지연이 두드러진 나라중의 하나. 정제·판매에 관해서도 복잡한 규제 인허가제도가 있고 완전한 자유화에는 많은 장애가 있다. '92년 시점에 가격규제 철폐(현재 EC의 평균가격을 바탕으로 조정)의 가능성이 있는 정도이다.

〈表-1〉 유럽의 1차에너지 수요추이

(단위 : 석유환산백만톤)

		石 油	石 炭	天然ガス	原子力	기 타	計
1983	英 國	37.5	33.6	22.4	5.8	0.7	100.0 (193.0)
	프 랑 스	48.0	14.4	12.3	17.8	8.0	100.0 (186.3)
	西 獨	43.6	33.0	15.6	5.8	2.0	100.0 (252.7)
	이 탈 리 아	63.8	10.0	16.8	1.0	8.4	100.0 (135.5)
	스 페 인	59.8	25.1	2.8	3.3	9.0	100.0 (71.9)
	E C 計	47.9 (476.4)	23.8	17.1	6.8	4.4	100.0 (994.4)
1987	英 國	36.3	32.9	23.8	5.9	1.1	100.0 (208.7)
	프 랑 스	42.5	9.7	12.4	28.7	6.7	100.0 (206.5)
	西 獨	42.2	28.2	17.1	10.7	1.8	100.0 (271.7)
	이 탈 리 아	59.3	10.6	21.9	0.0	8.2	100.0 (148.9)
	스 페 인	52.7	24.1	3.4	11.9	7.9	100.0 (77.4)
	E C 計	44.9 (476.6)	21.7	18.7	12.8	1.9	100.0 (1,062.3)
E C 計 [EC委員會의 전망]							
1995	시나리오 1	44.1 (541.0)	20.2	18.9	14.6	2.2	100.0 (1,226.1)
	시나리오 2,3	44.2 (573.0)	20.3	19.6	13.9	2.0	100.0 (1,296.3)
2010	시나리오 1	35.9 (493.1)	23.5	20.1	18.3	2.2	100.0 (1,374.8)
	시나리오 2	34.5 (537.6)	25.6	21.0	16.7	2.2	100.0 (1,558.3)
	시나리오 3	30.2 (348.7)	9.2	28.8	29.2	2.8	100.0 (1,162.9)

〈자료〉 IEA / EC委員會

	시나리오 1 (從來케이스)	시나리오 2 (高價格케이스)	시나리오 3 (政策強化케이스)
原 油 價 格 (87년 실질, \$ / B)	1995 17.5 2010 30.0	20.0 40.0	20.0 20.0

〈表-2〉 유럽의 石油製品수요(1988)

(단위 : 100만톤)

		内需	輸入	輸出		内需	輸入	輸出		内需	輸入	輸出
나프타		3.2	1.7	0.3		8.1	4.9	0.2		6.5	4.8	0.2
휘발유	英	23.2	1.4	4.3	豆	18.8	3.2	2.6	西	26.0	8.7	1.2
제트유/등유		7.7	0.4	1.0	朗	3.4	0.5	0.8	獨	3.8	2.9	1.2
경유	國	17.8	0.4	4.8	斯	32.6	9.4	1.7	獨	52.7	17.5	1.7
중유		11.1	3.3	3.2	6.4	0.7	3.5	2.7	獨	8.0	5.7	1.4
기타		8.6	1.3	2.1	8.4	3.5	2.7			9.3	5.9	2.1
合計		71.6	8.5	15.7		77.7	22.2	12.5		106.3	45.5	6.8
나프타		2.0	1.6	0.7		3.4	2.7	1.2		28.6	24.0	12.6
휘발유	이	12.4	0.4	4.0	斯	7.2	0.3	2.3	E	99.4	24.8	30.7
제트유/등유	탈	1.9	-	1.9	페	2.3	0.1	1.4	C	25.3	5.5	11.1
경유	리	26.7	5.8	3.4	인	12.3	1.7	0.7	獨	172.6	55.5	36.8
중유	아	25.4	9.5	2.7	인	6.4	0.7	5.3	獨	68.9	34.5	31.2
기타		13.4	1.4	-	6.4	2.2	1.7			51.4	17.7	14.7
合計		81.8	18.7	12.7		38.0	7.7	12.6		446.2	162.0	137.1

〈表-3〉 유럽의 精製能力 추이

(단위 : 100万噸)

	1979		1988		
	정제능력	分解裝備率(%)	정제능력	分解裝備率(%)	정제가동률(%)
英國	133.3	16.2	90.8	34.0	96.0
프랑스	168.3	8.6	92.1	25.1	80.0
西獨	153.9	16.2	81.9	38.7	108.0
이탈리아	154.5	9.4	117.0	26.7	68.0
스페인	70.1	3.3	61.9	22.8	78.0

〈주〉 분해장비율은 FCC換算.

〈表-4〉 유럽의 주유소 추이

	1979		1988		
	S/S數	S/S數	平均販売量(kl/年)	Self化率(%)	슈퍼점유율(%)
英國	26,500	20,000	1,750	44	8
프랑스	41,500	29,000	1,250	29	37
西獨	27,000	18,700	2,090	92	9
이탈리아	38,800	30,400	930	9	1
스페인	4,800(83年)	4,950	3,600	0	0

〈주〉 평균판매량은 휘발유와 경유의 합계

② 국내시장은 국영 ENI(AGIP)가 전체의 30%이상 을 점유하고 있다. 또한 수익성이 저조하기 때문에 메이

저의 철수가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시장규모가 크다는 점과 EC통합에 대비, 메이저가 판매망의 확충을 개시하

는 등, 최근 재참입을 계획하는 기업이 나타나고 있다.

③ 석유산업의 합리화가 지연되고 있고, EC회원국 중 최대의 정제능력(210만B/D)을 보유하고 있으나, 가동률은 70% 전후이다. 주유소의 감축도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촉진시키기 위해 2리라/의 폐업보상기금이 발족되었다. 석유기업은 복잡한 정부의 규제가 기업의 코스트 부담을 대폭 증가시키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 (5) 스페인

① 정부는 원유제품의 수입 및 수송, 정제, 판매, 가격의 모든 면에서 규제 또는 개입하고 있다. 특히 국내경제 품에 관해서는 기업(CAMPSA)에 유통 독점권이 부여되어 있다.

② 국가가 소매가격을 통제(고정제)하고 있어 경쟁은 전혀 없다. 주유소가 불과 5,000개소 정도이기 때문에 향후 증가가 예상된다. 더구나 주유소 1개소당 휘발유, 경유의 판매량은 월간 약 300㎘에 달한다.

③ 정부가 '86년의 EC가맹에 즈음하여, '92년까지 대폭적으로 자유화할 것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약간의 혼란이 예상된다.

## 3. 산유국의 자본참입에 대한 평가

(1) 기존의 산유국 자본은 유럽시장에서 정제능력 65만B/D(5%), 주유소 7,000개소를 소유하고 있다.

(2) 이러한 기업에 대해 각국 정부·기업은 기본적으로는 공급안정에 공헌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석유산업에의 규제가 남아있는 프랑스, 스페인 등에서는 참여할 때에 정부의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 (3) 앞으로는

① 원유공급이 타이트해지고 원유의 판로확보를 위한 참입의 매력이 상실되어질 수 있다는 점

② GULF의 유럽철수와 같은 적당한 하류부문시설 매각의 기회가 감소된 점 등 때문에 향후 대폭적인 증가를 예측하기는 무리다.

(4) 또한 EC는 산유국과의 관계강화라는 관점에서 OPEC, OAPEC, GCC 등과 정기적인 회합, 협의를 하고 있고, GCC와는 상호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 4. 환경문제

### (1) 휘발유의 품질

가솔린은 EC에 의해 최대 0.4g/l로부터 0.15g/l의 폭으로 규제가 제시되어 있고, 포르투갈을 제외한 11개국이 0.15g/l로의 인하를 결정했다('91년 6월 실시 예정). 옥탄가는 무연고급이 95(RON), 벤젠은 5vol%이다.

### (2) 경유의 유황분(Max)

EC로부터 0.3%와 0.2%의 2개안이 제시되었으나, 대개 북유럽제국은 0.2%, 남유럽제국은 0.3%를 선택했다. 향후 특별한 억제의 관점에서 0.05%로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 (3) 대체연료

알코올, 에테르류 등 수송용 대체연료에 대한 통일기준 작성성을 향후 촉진키로 함.

### (4) 지구온난화 문제

기본적으로는 EC만의 문제는 아니므로 국제적인 장(IPCC등)에서 협력해야 한다. 그러나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향후 검토의 결과에 따라 미래의 에너지·믹스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원자력발전은 이점에서 우위에 있으나 EC 가맹국 중 원자력발전 추진국은 현재 프랑스와 벨기에의 2개국에 지나지 않는다는.

## 5. 맷는말

(1) EC의 에너지시장 통합은 많은 난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예정대로 '92년까지 실현될 것이라는 견해는 적다. 지금부터 2000년경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통합을 이를 것으로 보여진다.

(2) 석유시장의 규제완화도 예상만큼은 진전될 것 같지는 않다. '92년까지 정부에 의한 석유가격 규제는 완화 또는 철폐될 가능성이 있으나, 세계의 평준화, 환경 규제의 엄격한 수준의 통일 등에 대하여는 선조치를 예상하는 말도 강하다. 또한 석유시장의 신규참입에 관한 정부의 규제는 그것이 지나치게 규제색이 강하지 않는 한 이번의 규제완화대상은 되지 않는다.

(3) 시장통합에 대비하여 석유기업은 계속 합리화를 추진해 나아갈 생각이다. 일부국가에서는 가능한한 합리화는 완료하고 있고, 이후에는 특정한 부문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투자를 개시하는 것도 고려되고 있다. 이 경우에는 환경규제의 진전을 배경으로 제품의 차별화(무연화, 고온탄가), 주유소의 근대화·다각화 등이 중점이 된다.

(4) 산유국의 참여에 대해서는 원유의 안정공급이라는 관점의 평가가 강하다. 또한 조업상의 적자를 자금보전과

저렴한 원유의 공급에 의해 구제하여주는 것에 대한 기대도 일부에는 있다. 그러나 향후의 참입확대 가능성은 석유시장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 때문에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5) 휘발유의 무연화, SOx대책 등은 유럽에서는 여전히 향후의 과제이다. 지구 온난화문제( $CO_2$ )는 유럽 특히 북유럽제국에서는 진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이 점에서 국제적인 이니셔티브를 가졌다라는 의욕도 강하다. ●

## □ 관 보 □

### ◎동력자원부공고 제90-13호

#### 송유관사업법시행령(안) 입법예고

송유관사업법시행령 제정을 추진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골자를 법령안입법예고에 관한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90년 5월 16일  
동력자원부장관

#### 1. 제정취지

송유관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정한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송유관사업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이 적용되는 송유시설의 구체적인 범위, 송유관사업의 허가기준 및 안전관리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송유관에서 제외되는 시설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나. 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신규송유관사업허가 시 허가의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

다.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채용되는 안전관리자의 종류 및 자격 직무범위등을 규정함.

라.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자의 채용 및 해임신고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송유시설에 대한 완성검사, 안전검사권한을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해 설립되어 있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

#### 3. 의견제출

이 송유관사업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0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동력자원부장관(참조 : 석유수급과장, 전화 : 500-27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과 주소